

홍제동 8-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7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4월 29일
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당해 지역은 2004.6.25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거환경개선사업) 수립되어, 2009.5.14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구역확대(0.7ha→2.3ha) 및 사업시행방식변경(주거환경개선→주택재개발)된 정비예정구역이며,
- 2012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“도시정비법”)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해제요청하여야 함에 따라,
- 정비예정구역 지정(기본계획변경수립)으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,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자 함

2. 도시계획사항(변경없음)

- 1종 일반주거지역

3. 지역현황

구 분	홍제동8-50번지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
위 치	홍제동 8-50번지일대
면 적	2.3ha
기존건물	128동

4. 추진현황

- 2006.06.25 :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거환경정비사업)
- 2009.05.14 :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(정비예정구역 지정)
- 2010.11.17 : 주민설문조사 실시(1차)

- 2011.12.01 : 주민설문조사 실시(2차)
- 2012.02.01 : 도시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법령신설
- 2013.04.01 : 사업추진/해제 주민의견조사 실시
- 2015.01.31 : 일몰제 적용(3년 기간 도래)
- 2015.02.11 : 주민공람 실시(~03.13까지)

※ 주민설문조사 결과

구분	계	재개발 찬성	재개발 반대	기타(무효, 무응답 등)	조사기간
토지등 소유자	169명	1차 73명 (43.2%)	64명 (37.9%)	32명 (18.9%)	2010.11.17 ~ 12.24
		2차 45명 (26.6%)	37명 (21.9%)	87명 (51.5%)	2011.12.1 ~ 12.28
	173명	3차 27명 (15.61%)	44명 (25.43%)	102명 (58.96%)	2013.4.1 ~10.31

4. 의견청취(안)

-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
가. 정비예정구역 해제(안)

구역명	구역명	위치	면적(ha)	정비예정구역 지정(고시번호)
기정	홍제동8-50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	서대문구 홍제동 8-50번지일대	2.3	2009.5.14(서고시 제2009-193호)
변경	해제			

○ 기본계획(해제(안))

구분	생활권 유형	구역 번호	동명	지 번	면적 (ha)	용적률	층수	건 폐 율	추진 단계	사업실행 방식	정비 유형	비고 (정비예정구역지정)
기정	A	12	홍제 3동	8-5 0	2.3	170%	7층 이하	60%	2	주택재 개발	전면	2009.5.14(서고시 제2009-193호)
변경	해제											

※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
5.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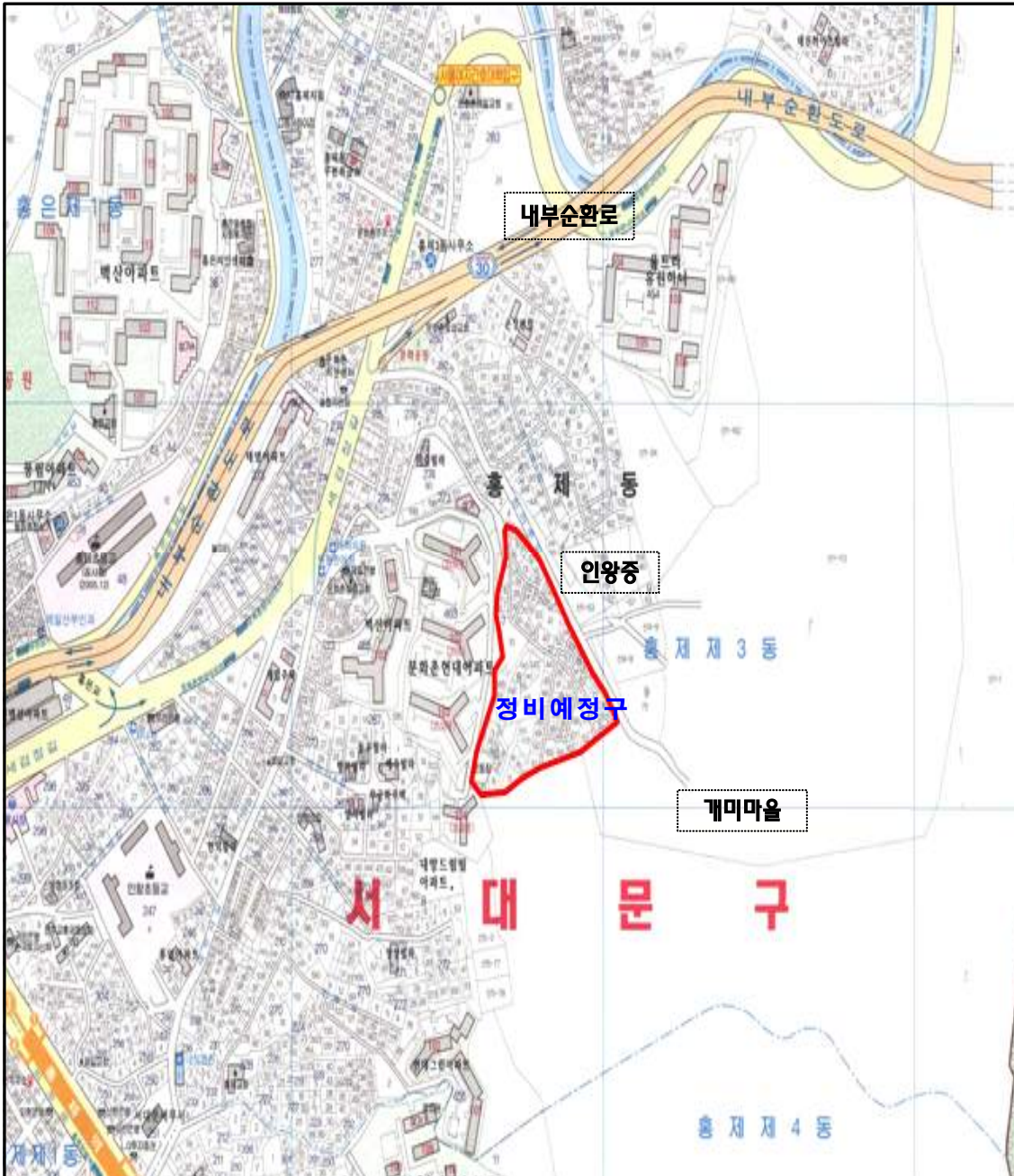
- 가. 공고방법 : 구보, 구청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
- 나. 공람기간 : 2015.02.11 ~ 2015.03.13
- 다. 주민의견제출 : 없음

6.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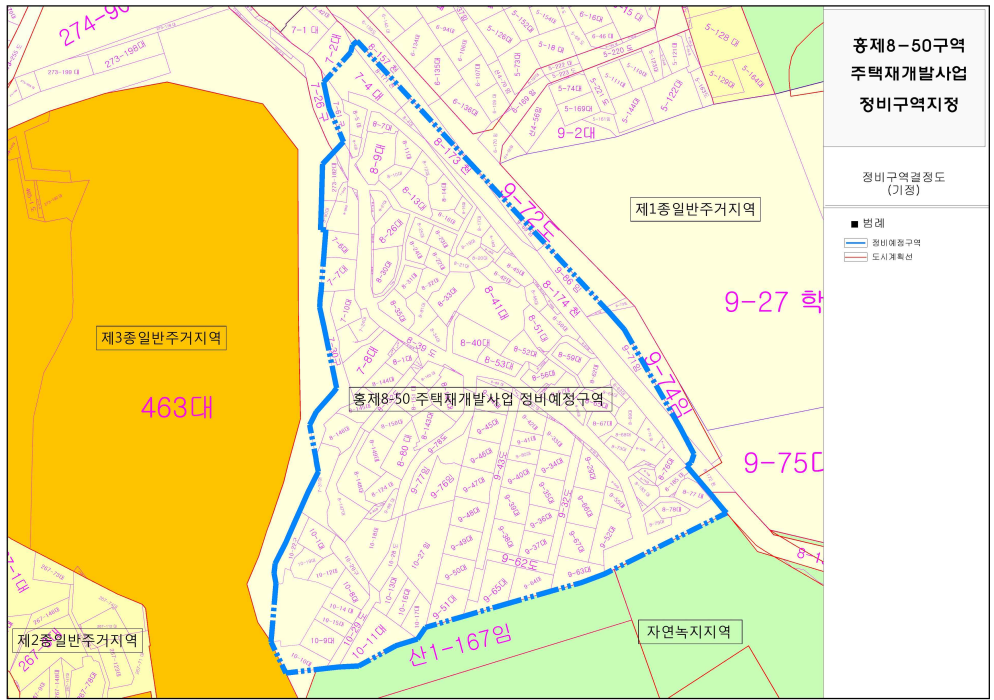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청취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예정구역(안) 상정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 추진

따로붙임 : 위치도 및 정비구역 해제 결정도. 끝.

□ 위치도



□ 변경전 : 정비예정구역



□ 변경후 : 정비예정구역해제

